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아동학대살해 행위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등〉

■ 장동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21호)

2024.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아동학대살해의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2
2. 약식명령 고지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	7
3. 검사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심판 청구 대상 범위에 아동학대 살해의 미수범죄 추가	11
4.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교육기관과 위탁교육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추가	14
5.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19
6.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변경·취소 청구권 부여	26
7.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 등 부여	3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장동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20.
3. 회 부 일 : 2024. 9.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적으로 아동학대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의 경우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그 미수범에 대하여 검사가 친권상실심판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는 등의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아동학대살해의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 제4조¹⁾에 제3항을 신설하여 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① 제 <신 설>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나. 아동학대살해의 미수범 처벌규정 필요 여부

- 현행법 제4조제1항은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 제250조제1항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에 비하여 아동학대 살인죄는 그 행위의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가중 처벌하고 있는 것임²⁾.

1)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내 용	처벌내용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제257조(상해) 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 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제257조 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제 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 (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제271조(유기) 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 (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형법」 제25조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형법」 제29조는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한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자 하는

2) 법률 제1793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2021. 3. 16. 시행)의 개정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경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미수범의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형법」상 살인죄의 미수범은 같은 법 제254조에 따라 처벌하게 되고, 「형법」 제25조는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살인미수죄로 유기징역 등을 받은 경우 「형법」 제55조 제1항제3호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음.

형법 제55조제1항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 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 「형법」상 살인죄의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미수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 그 형기는 2분의 1인 ‘2년 6개월 이상의 징역’으로 낮아질 수 있음. 이에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형법」 제62조³⁾에 따른 경우 살인미

3)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

수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게 됨.

- 따라서, 개정안 제4조제3항과 같이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면 이 법에 따른 아동학대살해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법률상 감경이 되더라도 형기가 ‘3년’을 초과하게 됨.
- 아동학대 살해죄를 일반 살인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려는 이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학대살해 미수죄를 「형법」 상 살인미수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려는 것은 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 한편, 「형법」 제250조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그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형량과 미수범 처벌면에서 개정안과 유사한 형식의 규정으로 볼 수 있음.

형 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집행유예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법률조항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놓았다 하여 곧 그것이 법관의 양형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⁴⁾는 결정을 한 바 있음.

□ 따라서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국민 일반의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무부는 중대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어떠한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구성요건,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헌재 1995. 4. 20. 93헌바40 결정

2. 약식명령 고지 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u>선고하면서</u> 2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 ----- ----- <u>선고하거나</u> 약식명령을 <u>고지하면서</u> ----- ----- ----- ----- ----- ----- ----- -----.
②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행(實刑)을 <u>선고할</u> 경우에 병	② ----- ----- ----- ----- ----- ----- ----- <u>선고하거나</u> 약식명령

현 행	개 정 안
과한다.	을 고지할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u>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행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u>	④ ----- ----- ----- ---- <u>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u> ----- ----- -----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나. 약식명령 고지 시 이수명령 병과 필요 여부

- 현행법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약식명령이란 약식절차⁵⁾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재판을 말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448조제1항은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5) 약식절차는 공판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서면심리에 의하여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선고하는 재판절차로서 실무상 구약식이라 한다.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검사의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검사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23년도에는 약식명령 청구가 정식재판 청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아동학대행위자의 재판 형식이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많아짐에 따라 법원에서도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

연도	구분	사건 접수 (신수)	처분계	처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구속	불구속		
2019년		7,994	7,953	68	738	260	2,404
2020년		8,801	8,625	68	744	336	2,449
2021년		16,988	17,119	124	871	463	4,798
2022년		17,317	17,189	87	747	660	5,613
2023년		19,468	19,301	77	778	918	6,762

※ 자료: 법무부

-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는 유사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유사 입법례>

법률명	내 용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u>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u> ②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징역형의 실행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u>약식명령을 고지할</u> 경우에 병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징역형의 실행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u>약식명령을 고지할</u>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각각 집행한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u>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톱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u> 1.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2. 이수명령: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행을 <u>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u> 경우에 병과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집행한다. 1.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 2. <u>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u>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3. 징역형의 실행을 선고할 경우: 형기 내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 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
-----제4조제3항, 제5
<u>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u> -----

-----.

-----. |
| ②·③ (생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11 –

나. 검사에게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죄에 대한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심판 청구 의무 부여 필요 여부

- 현행법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9조는 제5조에 따른 아동학대 중상해 범죄 또는 제6조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이는 아동학대중상해범죄 및 상습적인 아동학대범죄로부터 아동 또는 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살해의 미수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민 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무부는 중대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아동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교육기관과 위탁교육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추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⁹⁾에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과 그 종사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27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 26. (생 략) <u><신 설></u>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26. (현행과 같음) 27. 「 <u>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 <u>초·중등교육법 시행령</u> 」 제54조에 따라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과 그 종사자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나.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교육기관과 위탁교육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추가 필요성 검토

□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에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교육기관¹⁰⁾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¹¹⁾에

10)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한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한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대한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대한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한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교육목표
5. 학칙
6.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8. 교직원 배치계획서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외국 대학 입학에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2.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4. 그 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한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등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

따라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과 그 종사자를 추가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과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있는 아동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적 기관이 조기에 개입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이 법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을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의 조기 발견 및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고의무자를 추가하여 아동학대 신고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현행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등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안교육기관과 위탁 교육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게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시해야 한다.

1.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한편, 현행법은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또한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처벌하고 있음.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아동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과 그 종사자에서 “교육기관 등”이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보완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 현행 | 개정안 |
|--|---|
|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 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제3호</u> 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 |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 조치) ① -----

<u>제3호</u> 또는 <u>제5호</u> -----

----- |

현행	개정안
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②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u>제1항제3호 및 제4호</u> 규정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분리·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등을 인도 받은 <u>보호시설·의료시설</u>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u>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u>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u> <u>게 인도</u> ② ----- -----<u>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u>----- ----- ----- -----<u>보호시설·의료시설의 소재지 또는 연고자 등의 주거지</u>를----- -----. ③ <u>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u>----- -----. ----- ----- ----- ----- ----- -----.

현 행	개 정 안
④ ~ ⑧ (생 략) <u><신 설></u> <u><신 설></u>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 른 연고자 등의 기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⑩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 담공무원은 제1항제5호의 조치 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연고자 등의 동의를 얻어 그 범죄경력을 확 인하는 등 피해아동등의 보호 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응급조치로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가능 여부

- 개정안은 피해아동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의 일환으로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현행법 제12조의 응급조치에는 ①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②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③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④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가 있음¹²⁾.

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 개정안은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숙한 환경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신속한 심리적 안정을 확보 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응급조치는 그 성격상 급박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예외적으로 취하는 조치인 점, 법원은 개정안과 유사한 친족 등 인도의 경우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에만 보충적으로 결정한다¹³⁾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현행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친족 등에게 인도한 보호처분 현황 관련 통계는 확인되지 않고, 제47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중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¹⁴⁾에게 가정위탁” 결정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1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인도할 수 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제6호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처분 현황, 법무부>

(단위 : 건)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인용결정(계)	808	958	1,283	463	212	133
6호 처분	31	38	44	34	7	8

□ 다만, 현장에서 응급조치로서 피해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경우에 보호시설의 수용 가능 여부 등에 따라 피해아동을 실제 생활지역을 벗어난 곳으로 격리하거나 인도하여야 하는 등의 곤란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가 피해아동등의 복리 차원에서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 개별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추가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그러나 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상태 확인 및 보살핌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지 등 연고자가 실질적으로 피해아동등을 보호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14)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8조(수탁 연고자 등의 선정) ① 판사는 법 제47조제1항제6호의 가정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해아동의 친족 기타 피해아동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 또는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이하 “연고자 등”이라고 한다) 중에서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고 피해아동의 보호에 적당한 환경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② 판사는 제1항에 따라 수탁 연고자 등을 선정함에 있어서 연고자 등의 직업, 소득, 성행, 범죄경력, 가정환경, 피해아동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미리 연고자 등의 의견을 상당한 방법으로 들어야 한다.
- ③ 판사는 제1항에 따라 수탁 연고자 등을 선정함에 있어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에게 연고자 등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무부는 중대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피해아동 등이 낯선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 보인다는 점과 범죄경력 확인 등을 통해 피해아동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경찰청은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 안 제12조제1항에 대하여 응급조치는 신고출동 현장에서 신속하게 피해아동등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단기적·임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이고,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가 추가되면 연고자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인도 절차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공백으로 인하여 신속한 보호·인계가 어려울 수 있어 보호시설 인도를 활동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며, 성질상 응급조치에 적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해당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가되는 응급조치도 「아동복지법」상 제27조의3의 응급조치 거부 금지 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안 제12조제10항의 연고자의 범죄경력조회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은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복지법 위반 등’
조회할 범죄경력의 종류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음.

6.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변경·취소 청구권 부여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이나 임시조치의 취소 또는 임시조치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① (생략) <u><신 설></u>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	②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임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제1항의 신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 임시조치 기간의

나. 검사에게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종류의 변경 및 취소 청구권 부여 필요 여부

- 현행법상 임시조치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판사의 직권(제22조제2항),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할 법원에 신청(제22조제1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아동학대행위자가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¹⁵⁾ 불이행 시 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피해 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의 청구(제22조제3항)가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가능한바, 개정안은 제22조제2항에 검사에게 일반적인 임시조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청구권을 부여 하려는 것임.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①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 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임시조치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임시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

- 1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 제14조에 따라 검사에게 부여된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 청구권¹⁶⁾ 외에 법원이 결정한 임시조치의 기간 연장, 종류 변경 또는 취소 청구를 할 수 있게 됨.

○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검사가 법원의 직권발동 촉구의 차원에서 임시조치로 유치된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법원에 임시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연장하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법원에 임시조치의 취소·연장 등을 구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기간 연장, 종류 변경 또는 취소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수사의 진행 상황이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을 방지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안 제22조제5항은 법원이 같은 조 제3항(직권, 아동학대행위자 등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제4항(임시조치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への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16)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여 시·도지사 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따라 임시조치의 종류를 제19조제1항제6호(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또는 제7호(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로 변경할 경우 의료기관 등의 장, 아동학대행위자, 그 보조인 등에 대한 고지하되, 이는 임시조치의 고지 절차를 준용하는 내용임.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⑥ 제1항제6호에 따라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임시조치의 고지) 법원은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제44조에서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7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이는 임시조치의 변경에 관하여 변경된 임시조치를 이행해야 할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불복 절차 등을 알리고, 위탁기관에 알림으로써 이에 대응하여 적절한 피해아동등의 보호 및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무부는 중대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검사의 변경 청구권 등을 인정하여 실무상 법원이 변경이나 연장 등의 필요성을 알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함으로써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안 제22조제5항은 “고지”를 “고지 또는 통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7.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 등 부여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청구권,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진술권,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및 기간연장 신청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을 검사에게 부여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에 검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제50조, 제51조, 제57조).

현 행	개 정 안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u>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u>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 9. (생략) ②·③ (생략) ④ 판사가 제1항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u>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u>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아동보호전문기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 ----- <u>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u> ----- ----- ----- ----- ----- -----. 1. ~ 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u>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u> ----- -----

현행	개정안
관의 장은 관할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 ⑦ (생략)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①·② (생략) ③ <u>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u>,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법원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 -----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u>-----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검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 -----.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① -----

[illegible]

현행	개정안
<u>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u>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u>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④ (생략)	<u>대리인, 검사, 변호사</u>----- ----- ----- ----- ----- ----- -----. ② ----- -----<u>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u>----- ----- ----- -----. ③·④ (현행과 같음)

나. 검사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 등 필요 여부

- ☐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는 아동학대의 경우 가정구성원 등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민사적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임.

- 현행법 제47조¹⁷⁾는 그 청구권자를 판사의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청구권 등을 검사에게도 부여하여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유사한 입법례로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¹⁸⁾이 있음.

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 ③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피해아동·피해자보호명령 비교>

구 분	현 행 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피해 아동· 피해자 보호 명령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u>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u>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u>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u>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u>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u>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u>

○ 참고로, 현행법상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검사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¹⁹⁾ 등을 청구하여 가해자와 피해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는 피해아동 등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음.

○ 이 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아동)과 법정대리인은 청구 가능하지만, 그 외의 청구권자는

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への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달리 규정하고 있음. 이 법은 판사의 직권 또는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청구권이 있는 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검사에게 그 청구권이 있음.

□ 한편, 현행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조제6항²⁰⁾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임시조치의 효력을 잃게 됨.

○ 따라서 검사의 공소제기로 인해 임시조치가 중단되면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게 될 수 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검사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다만,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조제6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를 행위자 및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필수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검사에게 직접적인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더라도 통지받은 변호사 등 현행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자에 의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할지에 대하여는

① 현행법 상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이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

20) 아동보호심판규칙(대법원 규칙 제3039호)

제10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⑤ 검사가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⑥ 검사가 사건을 기소, 불기소 또는 소년부에 송치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행위자 및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외에도 변호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고 판사가 직권을 명령할 수 있는 점, ② 유사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그 밖에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및 기간연장 신청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무부는 중대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자로서 검사를 추가하는 등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를 활성화하여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이 종료된 경우 검사에게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59
